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데이터 등의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조제2항).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규모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시책 수립,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우선 고려, 저소득층 등 대상 비용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안 제17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에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II. 검토의견

1. 인공지능 기본계획 관련

- 안 제6조제2항제6호의2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정부조직법」, 「초·중등교육법」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사항이므로,¹⁾ 각 기관의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정부조직법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략)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생략)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생략)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련

- 안 제7조 및 제8조는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의 심의·의결 등을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고 있음.
- 안 제7조 및 제8조의 문언에 따르면 위원회가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예산 편성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는데,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점,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예산의 편성도 기획재정부(향후 기획예산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기관의 권한범위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u>정책·사업 및 예산</u>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u>정책</u>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2의4.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u> <u>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12.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u>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삭 제></u> <u>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 인공지능연구소 관련

- 안 제22조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대학·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소에 대하여 출연·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안 제22조의2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학·기업 등과 함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공동설립된 연구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2조의2제5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출연·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비 지원의 구체적 형태인 출연과 보조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규율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시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2) 출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됨.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개 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u>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후 단 삭제></u>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대학·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u>출연 또는 지원·보조</u>할 수 있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u>지원</u>할 수 있다.
<u><신 설></u>	제22조의3(<u>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운영</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u>

4. 국가배상책임 관련

- 안 제16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그런데 동 규정상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라는 문언은 그 범위가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u>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u>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등)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u>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제품 등의 계약이나 활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해당 기관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는 국가가 인증한 제품, 국가의 평가를 거친 신기술 등의 구매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³⁾ 안 제16조제4항와는 차이가 있음.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37조(신기술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의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은 평가를 거쳐 정하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5. 기타 사항

- 기타 개정대상조문 간 시행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